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18

발의연월일: 2021. 3. 30.

발 의 자:양정숙·김한정·이은주

민형배 · 정필모 · 임종성

김수흥 • 윤준병 • 안호영

위성곤 · 김홍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.

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,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경우 피해・신고

- 고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
- ·신고·고발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 래할 우려가 높음.

또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한 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·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할 수 있으며 현행법의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을 피하려는 허점을 이용할 수 있음.

이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2항 중 "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
- 2.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이 아닌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 한 경우
- 3. 가해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	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	2
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	
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	
<u>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</u>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	하는
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	
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	
을 가중할 수 있다.	
<u> <신 설></u>	1.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
	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
	행위일 경우
<u><신 설></u>	2.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
	생이 아닌 학생에게 학교폭
	력을 행사한 경우
<u><신 설></u>	3. 가해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
	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사
	<u>실이 있는 경우</u>
③ ~ ⑫ (생 략)	③ ~ ⑫ (현행과 같음)